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실시 안내

1.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노인 제24-39호(2024.1.23.)호와 관련됩니다.
2.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은 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인권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을 반드시 연1회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인권교육 안내 -

- 교육일시 : 2024. 3. 12.(화) 13:00 ~18:00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종사자
- 교육장소 : 미추홀구청 대회의실
- 교육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032-426-8792~3)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노인인권교육 안내 1부. 끝.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수신자 노인복지시설 대표 귀하, 장기요양기관 대표 귀하

주무관

박상미

장기요양담당

김영애

노인장애인복지 전결 2024. 2. 2.

지과장

김명혜

협조자 주무관

유선안

시행 노인장애인복지과-6130

(2024. 2. 2.)

접수

우 221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 (송의동)

/ <http://www.michuhol.go.kr>

전화번호 032-880-4277

팩스번호 032-880-4369

/ pjsmv21@korea.kr

/ 비공개(5)